

신:공정거래위원회의원 김기
신:경제부장

정례브리핑 자료

(2004. 6. 15)



공정거래위원회

작성과	하도급기획과
작성자	과장 유희상, 사무관 김만환
전화번호	503-8894~5, (구내) 4869

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

I. 조사개요

-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횡포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범위반 예방을 위하여 '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해왔음

	<u>1999</u>	<u>2000</u>	<u>2001</u>	<u>2002</u>	<u>2003</u>	<u>2004</u>
· 조사대상업체(천개)	3	20	25	30	35	40
(원사업자수)	(1)	(4)	(8)	(8)	(9)	(10)

-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질서와 원·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까지 7만개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임

- 금년도에는 3. 22부터 5. 15까지 건설, 제조,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, 10,000개 원사업자(대형업체)를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

* 제조업, 건설업, 대형소매업, 통신판매업, 소프트웨어사업, 건축설계·엔지니어링활동업, 수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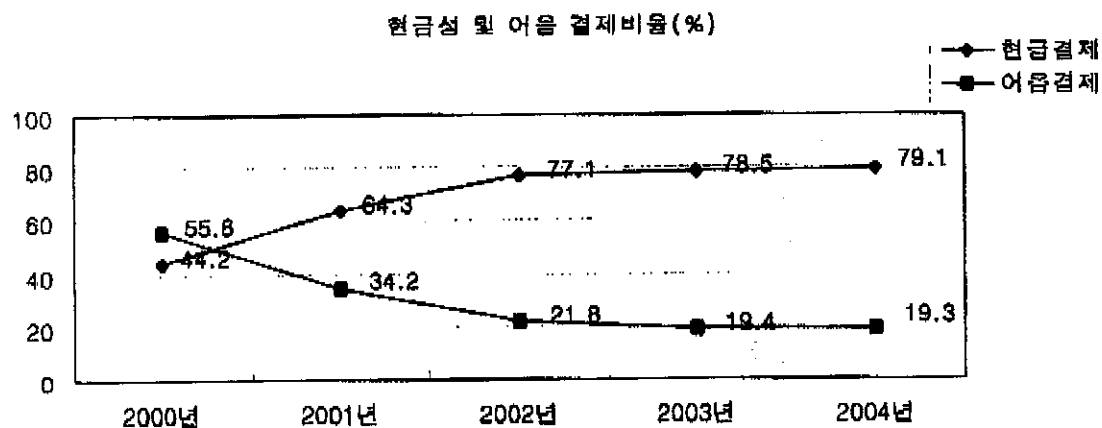
II. 조사결과

□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음

- 현금성 결제비율은 79.1%로 증가(전년대비 0.6%p 증가),
어음결제비율은 19.3%로 감소(전년대비 0.1%p 감소)

* 현금성 결제수단 : 현금 · 수표, 기업구매전용카드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

-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· 포상, 세액공제, 벌점감점,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 · 홍보 강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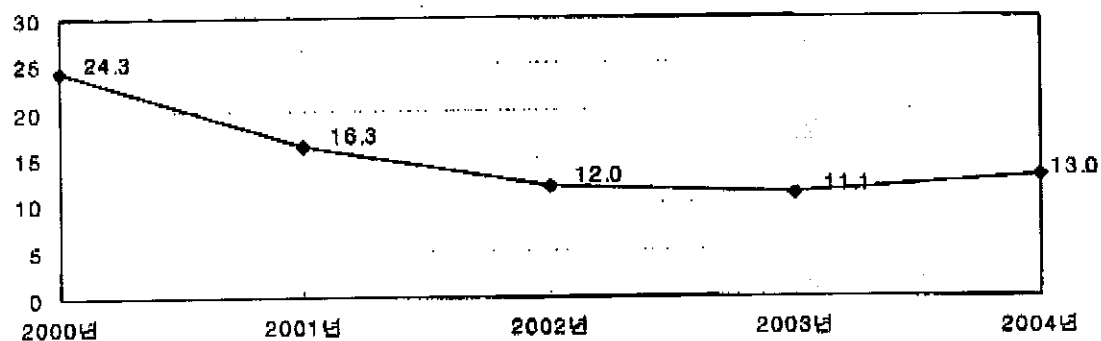


- 또한, 100% 현금성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,056개 업체로서 '03년(876개) 대비 180개 업체 증가
- 이중 범위반 혐의도 없는 업체는 396개 업체로 '03년(352개) 대비 44개 업체 증가

□ 반면,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되고
법위반 혐의업체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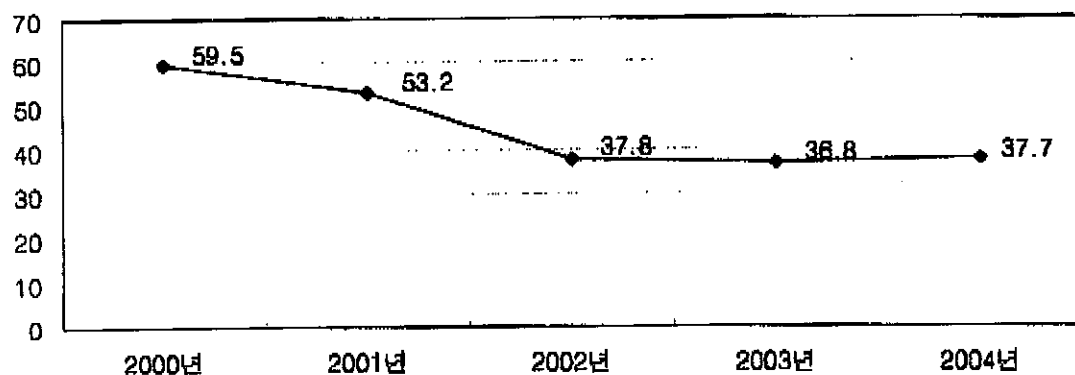
○ 법정지급기간(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이내)을 초과하여 하도급
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3.0%로 약간 증가(전년대비 1.9%p 증가)

법정지급기일초과 업체비율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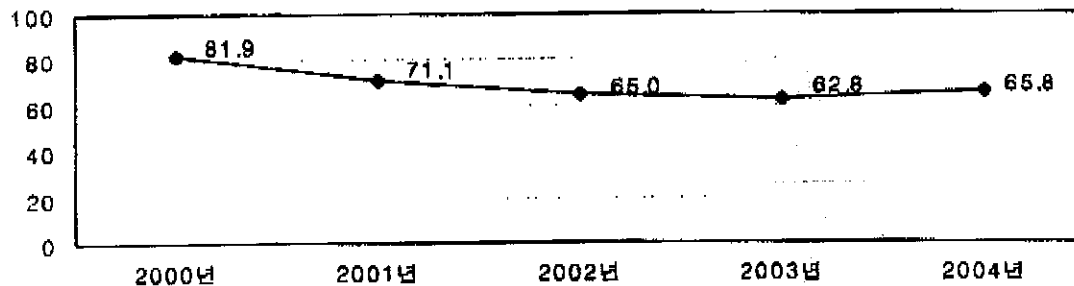
○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(만기일 60일 이상)을
지급한 업체비율은 37.7%로 약간 증가(전년대비 0.9%p 증가)

장기어음지급업체 비율(%)



- 범위반 혐의업체비율은 65.8%로 약간 증가(전년대비 3%p 증가)

범위반 혐의업체 비율(%)



- 이와 같이 대금지급조건이 다소 악화되고 범위반 혐의 업체가 약간 증가한 사유는

-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 확대 등 경영난 심화

*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(%) : ('02년) 73.2 → ('03년) 68.8(4.4%p 감소)
(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2004. 2.)

* 매출액경상이익률('02년→'03년, %) : 제조업 평균 4.7→4.7 대기업 5.4→6.0, 중소기업 3.4→2.5 (한국은행, 200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, 2004. 5.)

- 조사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기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반면 범위반 없는 100% 현금성결제 업체(91개)를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

- 이외에 '02년부터 허위응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, '04년부터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으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

III. 향후계획

1.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

- ☐ 원사업자(10,000개)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0,000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.31부터 7.3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중임

2. 서면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

- 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사업자(17개)에 대해서는 6.7부터 6.15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완료하고
 - 조사결과,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범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
- ☐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(1,919개)에 대하여는 표본을 선정하여 허위응답여부,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조사 실시할 계획
- 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범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
- ☐ 원·수급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% 현금성 결제하고 범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포상할 계획